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검 토 보 고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5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 1

Ⅲ. 주요내용 ····· 1

Ⅳ. 참고사항 ····· 2

Ⅴ. 검토의견 ····· 3

1. 제정안의 발의배경 ····· 3
2. 제정안의 체계 및 관계기관 의견 ····· 6
3. 수업연한(안 2조) ····· 10
4. 교장 등의 임명(안 제7조) ····· 11
5.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안 제10조) ····· 12
6. 부설교육기관 등(안 제11조) ····· 15
7. 부칙(시행일) ····· 16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5.

3. 회부연월일 : 2024. 10. 28.

Ⅱ. 제안이유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Ⅳ.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Ⅴ.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 동 제정안은 군의 의무장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고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1].

최근의 현실을 보면, 장기복무 의무장교 지원자 부족에 따라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장기복무 군의관은 전체 군의관(약 2,400여명)의 8% 수준에 불과한 190여명으로, 최근 단기군의관 중에서 장기복무로 전환하는 인원도 극히 저조한 상황임.[2]

[전체 군의관 대비 장기복무 군의관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장기복무 비율	7.7%	7.8%	8.0%

□ 참고로, 현재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위해 민간의대 위탁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명이 장기복무로 전환하였음.(2021년 1명, 2022년 1명)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매년 10여명의 각군 사관학교 졸업자·학군·학사장교 등 중위 이하 초급장교를 민간 의·치과대학 위탁생으로 선발, 의학과·치의학과에 편입시켜 4년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약 5년간 전공의 과정[3]을 마친 후 군으로 돌아와 9년을 추가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이를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장기복무 군의관들도 의무복무기간(사관학교 졸업자 기준 19년[4])을 마친 직후 대부분 전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민간 의과대학과 유사하게 6년간의 수업연한을 거쳐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위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5],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3) 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습기간(인턴, 레지던트)은 전문과목에 따라 3, 4년인 경우도 있으나, 통상 5년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5년으로 전제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사관학교 졸업자의 최초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므로 민간의대 위탁교육을 받아 9년의 의무복무가 추가될 경우 총 의무복무기간은 19년이 됨.

5) 의무복무기간 15년은 동 제정안과 연계된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3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장교가 수습기간(인턴, 레지던트)을 거칠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무사관학교 졸업자도 당연히 의무장교로 임용될 것으로 해석되므로 통상적인 수습기간(5년)을 감안하면 의무복무기간은 20년까지 연장될 것임.

[제정안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제도 개요]

선발	교육과정	교장, 교수 등
- 17~23세 -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 *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연장	총 6년 - 일반학과정 :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 군사학과정 : 국방부장관이 정함 * 고등교육법 준용	- 교장 : 장성급 장교 - 교수 등 : 군인·군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등 준용

임용	의무복무	학비 등의 상환
의사 국가시험 합격시 중위 임용 (의학사 학위 수여)	15년 + 전공의 수련기간(약 5년) * 현행 군인사법 해석상, 전공의 수련시(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약 5년)만큼 추가복무 필요	의무복무 미이행시 국가가 지급한 학비 상환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경우는 면제

주: 의무복무기간은 동 제정안이 아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 민간의대 위탁교육제도와 비교할 경우 의과대학 교육기간이 더 길어져 전문성이 있는 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질 수 있음.

[제정안의 의무사관학교와 현행 민간의대 위탁교육제도 비교]

구 분	생애 주기				
민간의대 위탁교육제도	19세 23세 24세 28세 33세 41세*				
	사관학교 4년	소위 임관	위탁교육 선발, 의대 편입 4년	전공의 수련 5년	의무복무 9년
의무사관학교(안)	19세 25세 30세 44세**				
	의무사관학교 6년	전공의 수련 5년	의무복무 15년		

* 주1. 두 제도 모두 만 19세 입학을 가정함.
2. 제정안에 따라 의무사관학교 졸업 후 중위로 임관하는 경우, 임관 직후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인 민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바로 이어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함.
3. 민간의대 위탁교육제도의 의무복무가 끝나는 나이는 약 만41세 12개월로, 만42세가 되기 직전임.
의무사관학교 위탁교육제도의 의무복무가 끝나는 나이는 약 만44세 12개월로, 만45세가 되기 직전임.

2. 제정안의 체계 및 관계기관 의견

□ 제정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문 표현이나 자구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9개 조문의 체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과 유사함.

한편, 안 제11조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경찰대학 설치법」에서 유사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제정안과「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의 조문 비교]

유용원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성일종의원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목적 제2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 설치의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 설치의 목적
제3조 수업연한 제4조 입학 자격 제5조 군적 편입 제6조 교육과정	제2조 수업연한 제3조 입학자격 제4조 군적 제5조 교과과정	제3조 수업연한 제4조 입학 자격 제5조 군적 편입 제6조 교육과정	제2조 수업연한 제3조 입학자격 제4조 군적 제5조 교과과정
제7조 교장 등의 임명 제8조 교수등의 자격 및 임명	제6조 교장 등의 임용 제7조 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제7조 교장 등의 임명 제8조 교수등의 자격 및 임명	제6조 교장 등의 임용 제7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9조 졸업자의 임용 제10조 졸업자의 자격	제8조 학위 수여 제9조 졸업자의 임용	제9조 졸업자의 임용	제8조 졸업자의 임용 제9조 졸업자의 자격

유용원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성일종의원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 학비 등의 상환	제10조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	제11조 학비 등의 상환	* 유사입법례 「경찰대학 설치법」 등
	제11조 부설교육기관 등		*유사입법례「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2조 면허취소 등			

□ 입학자격, 군적 편입, 교과과정, 졸업자의 임용 등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과 유사 조항의 경우 그 체계가 거의 동일하므로 법안심사과정에서 의무사관학교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문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6],

수업연한, 교장 등의 임용, 학비 등의 상환 및 **면허취소** 등의 조항은 의무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조문별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도 기한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제정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00630)**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02865)** 조문과 그 체계가 거의 동일하므로, 향후 법안심사과정에서 병합하여 심사

6) 해당 조항들의 경우 육·해·공사관학교 설립의 근거 법률인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검토사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새롭게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군에 임용되므로 「군인사법」을 함께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32호,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해당 개정안에서 **의무복무기간**(15년, 전공의 수련 시 수련기간 만큼 추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복무기간은 의무사관학교 도입 과정에서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한 단축 필요성과 군에서의 장기 활용을 위한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를 위한 동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상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기존 유사 학교[7] 설치 법률을 참조하고 있어 법문언 및 구조상의 특이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은 민간 의과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의학 교육이 가능한 사관학교를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신축 뿐 아니라 선발인원 협의, 입학전형 마련, 의학과정 외 군사학 과정의 교육범위·방법, 의무복무기간의 적절성 및 미이행 방지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검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7) 간호사관학교, 육·해·공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8)]

□ 소관부처인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의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중증외상 및 화생방 상황 대비 등 군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군의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제정안은 기존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의무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및 의무사관생도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가 선행된 후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장기군의관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군의무사관학교 시설 설립 및 운영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우선 계약학과[9)] 신설 등의 대안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관련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실효성 문제, 의과대학 건축·운영뿐 아니라 군 양성 시설로서의 관련 비용·봉급 등 막대한 재정부담,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8)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에 따라 향후 8년간 비용이 1,098억원(입학정원 40명 기준)~2,668억원(입학정원 100명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구체적인 내용은 비용추계서 참조.

9) 일정 기간 군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여 '국방부-민간 의대' 간 협업을 통해 만든 학과

3. 수업연한(안 제3조)

제정안은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수업연한)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6년으로 한다.

□ 제정안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10]에 따라 의과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이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의무사관학교는 안 제6조에 따라 의학 뿐 아니라 군사학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11]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사례를 보면 육·해·공사관학교가 전체 140~150학점 중 40~50학점의 군사학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 비해 25학점만 수강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이론 뿐 아니라 재난·응급간호훈련, 해양·항공간호훈련 등 간호병과에 특화된 군간호학 과정을 군사학에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훈련 시간[12]도 차이가 있는 등 병과의 특수성을 감안한 군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10)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11) 안 제6조(교육과정) ①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생 략)

12) 육·해·공사관학교는 입학전 5주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학기 중 월 2시간의 주간군사훈련, 학년별 5~6주의 하계군사훈련을 받는데 비해, 간호사관학교는 입학전 4주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학기 중 연 12시간의 주간군사훈련, 3주의 집중군사훈련을 받음.

4. 교장 등의 임명(안 제7조)

제정안은 의무사관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교장 등의 임명) ① 의무사관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의무사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 이와 관련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연혁을 보면 1967년 최초 육군간호사관학교로 창설될 당시 학교장을 중령으로 임명하다가 1972년 대령으로 변경되었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정(1975년) 이후 2002년부터 장성급(준장)으로 임명하고 있음.

현재 군의병과에 장성급 장교가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중 1명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나, 장성급 장교의 보직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방상황 및 군 인력 운용체계 전반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사전 연구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학비 등의 상환(안 제11조)과 제12조(면허취소 등) 등 의무복무 관련 검토사항

제정안은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면 또는 해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박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11조), 국방부장관은 임용된 자가 「군인사법」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정 안
제11조(학비 등의 상환) ① 제9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3.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4.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5.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제 정 안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용된 자가 「군인사법」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다만,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후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 학비 등의 상환 및 면허취소 조항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민간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비 등의 상환은 「경찰대학 설치법」 및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있음.

다만, 면허취소 조항은 유사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의 설치법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13]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13) 의사 면허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 등의 면허와 관련하여 3년 이내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의무복무 미이행에 대한 면허취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772)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안 제15조(면허취소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의 조건, 결격사유, 면허취소 등은「의료법」에서 규정하므로, 의사면허 취소 또한「의료법」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동 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해군 또는 공군의 고정익 비행자격 획득자(항공조종사)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음.

한편, 현행 「군인사법」[14]에 따르면 의무장교가 수습기간(인턴,

1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레지던트)을 거칠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학교 졸업자도 당연히 의무장교로 임용될 것으로 해석되므로 통상적인 수습기간(5년)을 감안하면 의무복무기간은 20년까지 연장될 것임.

□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것의 수입이 학비 등의 상환액에 비해 월등히 크고, 근무여건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비 상환 제도만으로는 조기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15].

이에 대응하여 의무사관학교의 원활한 군 의무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의무복무를 미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무사관학교에서 양성된 군의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만 민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방안들도 함께 검토될 수 있겠으나, 경찰[16], 조종사[17]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15) 참고로, 군 항공조종사의 경우에도 인력 유출이 문제되고 있는데, 민간 항공사 취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복무기간(500~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음. 다만, 이같이 일정한 제한이 있는 항공조종사도 꾸준히 민간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의무사관학교 제도는 보다 인력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16)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임.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17) 공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한 조종장교(회전익 조종장교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임.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부칙(시행일)

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제2조에서 시행 전에도 의무사관학교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사관학교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무사관학교의 설치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앞서 본 것처럼 시행일은 학교 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뿐 아니라 신입생 선발 1년 전에 입학 요강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시행일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포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로 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국방부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통과한 다음연도에 신입생 확보를 위한 절차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공포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